계약 관련 업무지침

개정이력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No. | 개정 사유 및 내용 | 개정일자 | 담당자 |
| 1 | 제정 | 2024.04.05 | 최철훈 |

목차

[목적 3](#_Toc13597716)

[범위 3](#_Toc13597717)

[제1조 (외부 위탁/서비스 이용) 3](#_Toc13597718)

[제2조 (외부자 업무위탁) 3](#_Toc13597719)

[제3조 (외부서비스 이용) 5](#_Toc13597720)

[제4조 (클라우드 서비스) 5](#_Toc13597721)

[제5조 (정보전송 보안) 6](#_Toc13597722)

# 목적

본 지침은 주식회사 제타큐브(이하 '회사')의 업무를 외부 위탁 또는 서비스 받기 위한 계약관리 등으로 회사의 자산을 외부로부터 적절히 보호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 범위

회사 업무와 관련된 제3자 및 아웃소싱 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 및 개인에게 적용된다.

# 제1조 (외부 위탁/서비스 이용)

1. 업무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거나 외부의 시설 또는 서비스를 이용 시 법적 요구사항 등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# 제2조 (외부자 업무위탁)

1. 회사의 정보처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거나, 정보자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및 협정서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가.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,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제3자 제공 금지

나. 기술적/관리적 보호 의무

다. 회사의 보안 규정, 지침, 가이드의 준수

라. 정보보호를 위한 점검 및 조사 수행에 대한 동의

마. 손해배상 등 정보보호 관련 책임과 역할 및 요구사항

바. 기타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

2. (법)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(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경우 포함) 계약서 또는 별도의 문서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가.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

나. 개인정보의 기술적/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

다.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

라.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

마. 개인정보에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

바.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

사.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

아.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 받아 처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

3. (법) 외부의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사용할 경우 물리적 보호설비(온습도 조절장치, 화재감지 장치, 소화설비 장치, 누수감지 장치, UPS, 이중전원선, 비상발전기 등)가 설치되어 운영되도록 계약서 및 협정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
4. 정보시스템 개발을 외주 위탁하는 경우 회사의 시스템 개발보안 관련 지침의 내용을 준용하는 보안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.

5. 정보시스템 개발을 외부 위탁하는 경우 정보시스템 인수 시 계약서에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6. (법) 해외법인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.

7. 외부자와의 계약 만료, 업무 종료 시 외부자는 다음의 사항에 확인 및 서명하고 관련부서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.

가. 제공받은 정보자산의 반납

나.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삭제

다. 중요정보 파기

라.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정보의 비밀 유지 등

8. 외부자의 담당자 변경 시 외부자는 다음의 사항에 확인 및 서명하고 관련부서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.

가. 제공받은 정보자산의 반납

나.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삭제

다. 중요정보 파기

라.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정보의 비밀 유지 등

9. 외부자가 계약서 및 협정서에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외부자 보안점검을 년1회 시행한다.

10. (법) 수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 계약서 및 협정서 등에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보안점검을 년1회 시행한다.

# 제3조 (외부서비스 이용)

1. 회사의 정보처리 업무를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등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및 협정서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가. 외부 서비스의 목적 및 범위

나. 기술적/관리적 보호 의무

다. 손해배상 등 정보보호 관련 책임과 역할 및 요구사항

라. 기타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

2. (법) 해외법인이 제공하는 외부 서비스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다.

# 제4조 (클라우드 서비스)

1.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,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(개인)정보보호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정의되어야 한다.

# 제5조 (정보전송 보안)

1. 타 조직에 개인정보 또는 "기밀" 자산등급으로 분류된 중요정보를 전송할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.

가. 관리책임: 위탁(제공하는 업체가 관리책임을 짐), 제3자제공(제공받은 업체가 관리책임을 짐)

나. 전송기술표준: 정보전송 시 협의를 통해 진행

다. 중요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: 외부자 계약 시 보안요구사항을 따름

라. 협약서 작성: 외부자 계약 시 보안요구사항의 내용을 따름